

국 민 권 익 위 원 회

제 4 소 위 원 회

의 결

의안번호 제2022-4소위36-국01호

민원표시 2BA-2206-0697789 사유지 점유 관련 국가배상 이의

신 청 인 A

피신청인 1. B

2. C

의 결 일 2022. 10. 17.

주 문

1. 피신청인 1에게, 신청인의 국가배상 신청에 대한 배상결정과 관련하여, 점유면적을 1,889㎡로 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.
2. 피신청인 2에게, 경기 (이하 주소 생략) 중 군(軍)이 점유한 1,889㎡에 대해 임대차계약 체결할 것을 시정권고한다.

이 유

1. 신청취지

신청인은 경기 (이하 주소 생략, 이하 '이 민원 토지'라 한다)를 소유하고 있다. 이 민원 토지 중 1,622㎡를 군부대가 군사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3회(2007년, 2009년, 2015년)에 걸쳐 사용료를 지급받은 바 있다. 2018. 7. 신청인은 피신청인 1에게 2015년 이후 사용료를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여 2020. 5. 배상결정서를 통보받았는데, 이전까지는 점유면적이 1,622㎡이었으나 413㎡로 감소되었고, 이에 따라 사용료가 1,457,740원으로 결정되었다. 이에 2020. 5. 신청인은 배상결정에 대한 부동의서 및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아직 회신이 없으니, 합당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.

2. 피신청인들의 의견

가. 피신청인 1

신청인의 국가배상 신청에 대해 사용부대의 작전성 검토 결과 등을 기준으로 배상결정을 결정하였다.

나. 피신청인 2

사용부대의 소요제기가 있을 경우, 이 민원 토지 중 군사시설이 점유한 면적에 대해 현황측량을 실시하고, 2022년 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.

3. 사실관계

가.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, 1984. 1. 24. 이 민원 토지는, 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」에 의해, 매매(1968. 4. 20.)를 원인으로 신청인에게 소유권

이 이전되었고, 2014. 11. 21. 증여(2014. 11. 19.)를 통해 소유권이 신청인의 조카 3인에게 일부 이전되어,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중 269,302/294,550를 소유하고 있다.

나.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, 이 민원 토지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전관리구역,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에 따른 제한보호구역(전방지역:25km)에 속해 있다.

다.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, 2006년 이후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점유와 관련한 국가배상을 총 4회(2006년, 2009년, 2015년, 2018년) 신청하였는데, 2015년까지는 점유면적을 1,622㎡로, 2018년 신청한 국가배상은 점유면적을 413㎡로 하여 재산손실배상액이 결정되었는데,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.

접수시기	사건번호	점유 기간	점유면적(㎡)	비고
2006., 2009., 2015.	2006년국배심제00호	-	1,622	
	2009년국배심제00호	-	1,622	
	2015년국배심제00호	-	1,622	
2018. 7. 30.	2015년국배심제00호/ 2020년특배심제00호	2015. 8. 1. ~ 2021. 4. 14.	413	이 민원 배심 이 민원 특배심

라. 이 민원 배심·특배심과 관련된 육군 00부대장의 작전성 검토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군사시설 종류	수량	1개의 면적	총면적(㎡)	비고
군부대 펜스(철조망)	1	200m	200	

마. 이 민원 배심·특배심에서는 점유면적을 413㎡로 하여 재산손실배상액을 결정되었는데, 그 사유 및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.

1) 사유

2) 신청인은 종전의 배상결정에서 확인된 점유면적을 그대로 청구하고 있으나, 경기북부시설단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에 의하면 종전 배상결정 기준일자 이후의 점유면적은 413㎡으로 축소되었다.

2) 산출 내역

점유기간	개별공시지가(원)	점유면적(㎡)	사용료율	일수	지분	금액(원)
2015. 8. 1. - 2015. 12. 31.	: 27,400 × 413	×	0.025 × 153/365	×	269802/294550	= 108,423
2016. 1. 1. - 2016. 12. 31.	: 28,300 × 413	×	0.025 × 366/366	×	269802/294550	= 267,152
2017. 1. 1. - 2017. 12. 31.	: 28,300 × 413	×	0.025 × 365/365	×	269802/294550	= 267,152
2018. 1. 1. - 2018. 12. 31.	: 27,900 × 413	×	0.025 × 365/365	×	269802/294550	= 263,376
2019. 1. 1. - 2019. 12. 31.	: 46,800 × 413	×	0.025 × 365/365	×	269802/294550	= 441,792
2020. 1. 1. - 2020. 12. 31.	: 48,400 × 413	×	0.025 × 366/366	×	269802/294550	= 456,894
2021. 1. 1. - 2021. 4. 14.	48,400 ³⁾ × 413	×	0.025 × 104/365	×	269802/294550	= 130,183
합						총계 1,934,972
						1,934,970원

바. 피신청인2는 경기 북부지역의 분임재산관리관이다.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된 군사시설인 펜스와 관련하여 2007. 4. 현황측량을 한 결과가 있으며, 피신청인2의 의뢰로 2022. 9. 7.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현황측량을 실시하였는데, 두 측량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) 2007. 4. 20. 지적현황측량 결과, 점유면적(군부대 펜스 안쪽)은 1,622㎡이다.

2) 2022. 9. 7. 지적현황측량 결과, 점유면적은 1,889㎡이다.

사. 2022. 8. 25., 2022. 9. 7. 신청인은 담당조사관에게 향후에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사용료 지급을 원한다고 하였다.

4. 판단

가. 관계 법령 등

별지와 같다.

나. 판단내용

- 1) 이 민원 배심·특배심에서 이 민원 토지에 군사시설이 점유한 면적을 413㎡로 한 이유에 대해 피신청인1은 단지 피신청인2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른 것이라고만 하고 있는 점, ② 2007년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현황측량 결과 군부대가 점유한 면적이 1,622㎡이고, 2022년에는 점유면적이 267㎡가 증가한 1,889㎡로 측량된 점 등을 고려할 때, 이 민원 배심·특배심에서 점유면적을 413㎡로 하여 재산손실배상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.
- 2) 그리고, 이 민원 토지 점유와 관련한 2006년 이후의 국가배상 이력을 볼 때, 오래 전부터 이 민원 토지에 군사시설인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고, 이 민원 토지 중 군이 점유한 면적인 1,889㎡는 직접부지인 점,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을 원하고 있고 「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」제32조에서 직접부지 중에서 토지소유자 반대로 현실적으로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이 민원 토지 중 군이 점유하고 있는 1,889㎡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2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.

5. 결론

그러므로 이 민원 배심·특배심에서 이 민원 토지 중 군이 점유한 면적을 413㎡로 하여 재산손실배상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이 민원 토지 중 군사시설이 점유한 면적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원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「부패방지 및

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1·2에게
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< 별지 >

「국가배상법」(법률 제14964호, 시행 2017. 10. 31.)

제10조(배상심의회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. 다만,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.

②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심의회(地區審議會)를 둔다.

제15조의2(재심신청) ①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(일부기각된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재심(再審)을 신청할 수 있다.

「국가배상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31380호, 시행 2021. 1. 5.)

제8조(지구심의회의 설치와 관할) ②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각 군부대에 두되, 그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9와 같다.

「국유재산법」(법률 제18661호, 시행 2022. 6. 29.)

제32조(사용료)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(料率)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. 다만,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.

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32733호, 시행 2022. 6. 29.)

제29조(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)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, 월 단위,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, 제6호 단서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1. ~ 2. < 생략 >

3.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: 1천분의 25 이상

「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」(국방부훈령 제2664호, 시행 2022. 6. 20.)

제2조(정의)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.

<별표 1> 용어의 정의(제2조 관련) 관련

1. ~ 8. < 생략 >

9. " 직접부지" 란 군사용 사·공유지 중 부대의 외곽 경계선 안쪽에 위치하거나 부대진입로, 군 관사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지를, " 간접부지" 란 군사용 사·공유지 중 부대의 외곽경계선 바깥에 위치하며, 거점·진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.

제4조(재산관리관 등 지정) ① 국방부장관은 소관 국유재산 및 군사용 사·공유지를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, 일반회계 및 기금 소속 재산별 재산관리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.

1.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 소속 재산

가. ~ 다. < 생략 >

라. 그 밖의 재산 : 국방시설본부장

② 국방시설본부 소속 지역시설단장은 해당지역재산을 관리하는 분임재산관리관이 되며, 분임재산관리관의 업무위임범위는 국방시설본부장이 정한다.

제32조(지상권 취득 또는 임대차 계약) ① < 생략 >

② 직접부지 중에서 묘지나 종중 및 종교재단 토지 등 매입이 곤란하거나 토지소유자 반대로 현실적으로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 지상권 취득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다만, 사용부대가 향후 안정적으로 토지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.

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2022년 10월 일